이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감사법무담당관

제정 2021 · 12 · 28 조례 제1777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시장의 책무)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주민이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(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(이하 "의견제출"이라 한다)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.
- 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규칙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,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 -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- 제4조(의견제출 제외 대상)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 상에서 제외한다.
 - 1.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
 - 2.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
- 제5조(의견제출 방법)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 서(전자문서를 포함하며, 이하 "의견제출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.
 -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

이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•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

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.

- 제6조(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)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(제 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, 이하 "의견제출인"이라 한다)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,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.
- 제7조(의견제출 검토)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규칙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서를 해당 규칙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.
 - 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.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.
 -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.
 - 1.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
 - 2.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
- 제8조(의견의 반영)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,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.
- 제9조(차별대우의 금지 등)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10조(비밀 준수의 의무 등)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 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해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

	성명							[]	대표	돈자			
							>	※ 공동	의견제	불시	대표자인	경우	√ 표시
의견제출인	주소												
 **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을 선정하여 표시,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	전화번호	5											
	전자우편	<u> </u>											
공동 의견제출	[] 해!	당 [[] 해	당되지	않음			대표7	다 인	원 :		명	
의견													
※ 취지와 이유를													
명확하게 밝혀 작성													
 참고자료													
※ 필요한 경우 제출,													
분량이 많은 경우													
별지 사용													
「지방자치법」 저	20조 및	「이천시	규칙의	제정과	개정 •	폐지	의견	제출	등에	관한	조례」	제53	조제1
항에 따라 위와 깉	l이 의견을	를 제출합니	니다.										
										년	월		일
	의견제출인									(서당	병 또는	인)	
이천시장 귀하													